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Burden of the Costs of Children and Policies Influencing Low Fertility Rates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차원을 넘어섰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출산행태가 개인적 삶의 차원을 넘어선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자녀 출산에 따르는 비용부담, 자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치의 불투명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업, 소득, 주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회피(risk aversion) 전략의 일환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하락 원인은 거시적 문제와 미시



박 세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적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2004년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 가족, 자녀 등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상승,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을 지연하고 기피하는 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경제적 부담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녀양육비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자녀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는데, 개별 가계에서 정확한 자녀양육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상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통 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가족이 생산적 경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노동력의 창출과 직결되는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희석되거나 소멸되었고,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 가치는 사라지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간접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시간적 비용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강화될수록 자녀양육과 관련된 선택의 폭이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모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녀양육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또는 일종의 강박관념까지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가운데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출산한 자녀 수 자체보다 자녀양육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자녀양육의 고비용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양육비 부담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²⁾ 가구 소득규모

대비 양육비 지출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허경옥(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자녀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의 37%, 두 자녀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의 46%를 자녀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동 연구에서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양육비는 한 자녀 가구의 경우 123백만 원, 두 자녀 가구의 경우 181백만 원, 세 자녀 가구의 경우 216백만 원이 소비되었다.³⁾ 또한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김승권(2003)의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소비규모 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녀인 경우 42.2%, 두 자녀인 경우 60.7%, 그리고 세 자녀의 경우 6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구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상승의 단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⁴⁾

정확한 자녀양육 비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과 가족의 발달주기를 고려한 가계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유용한 근거가 된다. 한편, 공적 부조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도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자녀양육비 측정 연구는 가족의 자녀와 관련된 비용대비 자녀 수 결정 및 가족생활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⁵⁾ 그러나 양육비 측정과 양육관련 비용의 지출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산행태를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실증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자녀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확한 양육비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고 있을 뿐이다. 호주의 인구학자 McDonald(2000)는 양육비 부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우려와 부담

3)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997, pp. 1~19.

4)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법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Magrabi, F. M., et. al.,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4.

1) Sleebos, J.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DELSA/ELSA/WD/SEM (2003)15, OECD, 2003.

2)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비공개자료, 2005.

감 내지 거부감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녀양육 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과 근거 없는 부담감, 거부감이 자녀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향후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출산율을 안정화/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개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수단들 가운데에는 개별 가족의 자녀수 결정과 가족생활에 따르는 비용부담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금지원 정책과 결혼 및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시장에서의 기회균등의 실현, 형평성의 제고, 사회정의의 실현 및 양성 평등 문화와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간접적 방안들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거나 제고하도록 개별 가정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personal choice)이면서 동시에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보장되어야 할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일 정책으로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고, 설령 신중하게 고안된 정책수단이라 하더라도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계획에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기존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다도 포괄적 접근을 통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르는 개인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수단은 개별가정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그들의 선택이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자녀양육비 부담 실태에 기초하여 향후 양육비 지원 여건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자녀양육비의 개념 및 측정방법

자녀양육비는 크게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식비, 의복비, 보육·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자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같은 비물질적 비용 그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취업을 중단한 경우 부모의 소득손실분과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자녀양육비를 논의하는 경우, 방법론적 한계와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주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직접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⁶⁾

이는 자녀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지출되는 소비항목들의 총합으로 측정되어야 하겠지만 전체 가계소비 구조 중에서 어떤 소비항목을 자녀양육을 위한 소비지출 항목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주거비나 실내가구 또는 자동차와 같이 가족구성원이 함께 공동적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항목이나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 중에서 명백하게 자녀를 위한 비용만을 분리·구별하여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는 가족규모나 형태,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가치관, 자녀의 수와 연령,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양육비 수준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녀관련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의식조사(opinion survey), 계측조사(budget approach), 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 approach)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의식조사의 경우 대표성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계측조사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비용을 계산하여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출조사는 가족소비실태조사와 같이 가구당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는 지출항목별 자녀양육비 측정법과 등가비용 측정법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지출항목별 자녀양육비 측정법은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동 항목별 지출액의 총합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지출액수에 자녀수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총 양육비를 자녀의 수로 나누는 평균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은 측정이

6) McDonald, "The Costs of Children: A Review of Methods and Results", Family Matters, 27, 2000, pp.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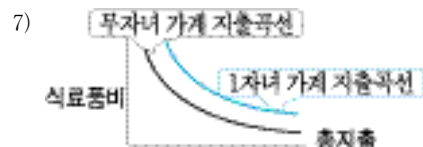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표준가계를 기준으로 지출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가족구조, 가족형태 및 가족의 생활수준 등 다양한 가족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둘째, 평균 양육비 또는 두당 양육비의 개념으로는 출생순서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출 유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가족구성원 공동으로 효용가치를 누리는 지출항목에 대해 자녀만을 위한 지출로 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지출항목별 측정법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측정한다면 양육비 규모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출항목별 자녀양육비 측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소비항목으로 쉽게 구별되는 소비항목지출액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소비항목지출액의 합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를 위한 소비항목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소비항목의 지출액의 경우 전체 가구원 수로 나누어 두당 지출액수를 산출하여 이용한다. 자녀를 위한 소비항목만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할 방법과 비교하여 가계 내 공동지출항목을 추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겠지만, 여전히 자녀만을 위한 순수 지출액을 명백하게 측정할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를 위한, 자녀와 관련된 소비지출 항목만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지출항목별 측정 방법과 달리, 가족구성원 공동의 효용가치를 갖는 지출항목 중에서 자녀만을 위한 지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가비율측정법(equivalence scale)이 있다. 동 방법은 가족원 모두를 위한 지출 가운데 자녀지출 부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한다. 즉, 가족규모, 연령, 가족형태 등에 따른 경제적 생활수준을 반영하는데, Espenshade(1984)는 엔겔지수를 응용하여 식비지출비율 개념으로 개별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측정한다.⁷⁾

Espenshade(1984)가 시도한 방법은 전체 가구 소득 중에서 식비에 지출한 비율이 동일하다면 생활수준도 동일하다는 엔겔지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한다. 즉, 자녀출생 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자녀출생 이전의 생활수준과 같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자녀양육비로 간주한다. 이때 경제적 생



활수준은 가계 총지출 가운데 식비를 위한 지출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등가비율측정법을 이용할 경우 자녀의 출생순서 및 자녀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가족형태나 가족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출항목별 자녀양육비 측정방법과 비교하여 상당히 현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가계의 물질적, 경제적 생활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양육비를 측정할 경우 양육비가 대체로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⁸⁾

3. 자녀양육비의 측정

본 논문에서는 2003년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자녀양육비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조사』는 종전의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로 확대한 것이며, 대상 가구에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및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조사에서 제외되어 동 자료의 분석 결과는 실제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보다 다소 높게 추정될 수 있다.

또한 『가계조사』 자료 중에서 자녀양육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확대가족은 제외하고 부모와 자녀세대만이 동거하는 핵가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0~18세 미만의 자녀양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계로 한정하기 위하여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연령을 20~49세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표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이상 가구와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전체 26,366표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3,073,029.5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3,073,029.5원 미만의 가계를 저소득 가계로 그 이상은 고소득 가계로 구분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표본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참고바람).⁹⁾

8) Espenshade, T. J., Investing in Children: 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1984.

9) 2003년도 전국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원으로 본 연구의 가구소득 평균보다 다소 낮음.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표본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20~49세로 한정하여 노인 단독가구 등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 고소득 가계와 저소득 가계의 일반적 특성(2003년)

(단위: %, 세)

	고소득 가계		저소득 가계	
	맞벌이 가구	일반가구	맞벌이 가구	일반가구
가구주 특성				
성별(남/여)**	99.3/0.7	98.8/1.2	97.2/2.8	95.7/4.3
평균 연령	39.3	39.6	39.1	38.6
교육 수준***			67.8	
고졸 이하	36.7	33.9		56.6
(초)대졸	51.8	50.8	30.4	40.2
대졸 이상	11.5	15.3	1.8	3.2
가구주의 배우자 특성				
평균 연령	36.4	36.8	35.8	34.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4.9	56.4	78.0	68.6
(초)대졸	41.0	40.7	21.0	30.4
대졸 이상	4.1	2.8	1.0	0.9
주택소유여부***				
자가 있음	68.5	74.2	49.0	50.0
자가 없음	31.5	25.8	51.0	50.0
평균 가구원수**	3.64	3.84	3.58	3.61
자녀수***				
없음	21.2	14.1	21.2	21.3
한자녀	19.9	22.3	19.8	27.3
두자녀	52.1	53.3	51.7	45.2
세자녀 이상	6.8	10.3	7.2	6.2
월평균 총수입	9,492,163	9,460,220	4,551,966	4,545,418
월평균 총소득	4,844,626	4,496,106	2,264,044	1,955,889
월평균 총지출	9,492,163	9,460,220	4,551,966	4,545,418
분석대상 가구(계)	4,924가구	5,409가구	4,837가구	11,196가구

주: 1) * p<.05, ** p<.01, *** p<.001, **** p<.001 고소득층에서만 유의미
 자료: 『2003년도 가계조사』 원자료(통계청) 재분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Espenshade(1984)가 적용한 등가비율측정법을 이용하였다. Espenshade(1984)의 등가비율측정법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가 있는 2세대 가족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자녀양육비

로 조작적 정의하고 있다. 등가비율측정법은 앵겔지수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부가족의 총지출 중에서 식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을 설정하고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가정한다.

따라서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지출 가운데 식비지출비율을 측정해야 하는데, 고소득 가계와 저소득 가계를 구분하여 식료품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그리고 20% 이상 등 5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총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수준에 따라 부부로만 구성된 무자녀 가계와 1자녀 가계의 평균 총지출 규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총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을

표 2. 한자녀 가계의 소득계층별 생활수준에 따른 월평균 총지출

(단위: 원, %)

소득 수준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비율	무자녀 가계	1 자녀 가계				평균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학생 (6~11세)	중고생 (12~17세)	
고 소득 가계	5% 미만	3,118,778 (282)	3,380,247 (53)	3,877,271 (47)	4,100,935 (50)	4,600,899 (89)	3,989,838 (239)
	5.00~9.99%	2,754,451 (544)	2,964,921 (107)	3,090,392 (174)	3,645,161 (94)	3,972,607 (225)	3,418,270 (600)
	10.00~14.99%	2,686,953 (87)	2,856,478 (147)	2,888,366 (55)	3,342,742 (68)	3,433,440 (62)	3,130,257 (332)
	15.00~19.99%	2,546,693 (68)	-	-	-	3,208,743 (12)	3,208,743 (12)
	20.00% 이상	2,391,620 (22)	-	-	-	-	-
저 소득 가계	5% 미만	2,583,326 (174)	2,801,666 (26)	3,033,899 (30)	3,252,527 (15)	3,770,540 (14)	3,214,658 (85)
	5.00~9.99%	1,685,646 (779)	1,876,199 (207)	2,079,476 (252)	2,050,298 (35)	2,129,168 (98)	2,033,785 (592)
	10.00~14.99%	1,563,804 (602)	1,711,510 (130)	1,888,917 (197)	1,855,355 (57)	2,003,432 (127)	1,864,804 (511)
	15.00~19.99%	1,356,359 (245)	1,474,600 (30)	1,727,688 (75)	1,603,542 (35)	1,848,210 (45)	1,663,510 (185)
	20.00% 이상	1,260,228 (171)	1,344,163 (31)	1,578,985 (66)	1,497,922 (13)	1,708,055 (43)	1,532,281 (153)

주: 괄호 안은 분석대상 수임.
 자료: 『2003년도 가계조사』 원자료(통계청) 재분석

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지출규모도 높게 나타나는데, 무자녀 고소득 가계 중에서 식료품비 지출비율이 5% 미만인 가구의 총지출액은 3,118,778원 반면, 저소득 가계 가운데 식비의 지출비율이 20% 이상인 가구의 총지출액은 1,260,228원 이었다.

이어서 <표 3>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총지출 대비 식료품비의 지출 비율에 따른 무자녀 가계의 평균 총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측정된 결과이다. 즉, 경제적 생활수준별로 1자녀 가구의 자녀연령을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6~11세), 그리고 중고생으로(12~17세) 구분하여, 이들 가계의 총지출액과 무자녀 가계의 총 지출액 간의 차액을 산출한 것이다. 고소득 가구의 영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최소 169,525원(총 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비율이 10~15% 미만인 경우)에서 최대 261,469원(총 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비율이 5% 미만인 경우)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계 가운데 생활수준이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총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비율이 20%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영아 양육비는 83,935원이었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자녀 양육비는 증가하지만 고소득 가구의 증가 정도가 저소득 가구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았다. 고소득 가구의 유아 1명의 자녀양육비는 총지출대비 식료품비 지출이 5% 미만인 경우 758,493원(소득 대비 12.1%, 가계지출 대비 19.6%)인 반면, 저소득 가계 중 총지출대비 식료품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 119,757원(소득 대비 9.6%, 가계지출 대비 20.2%)에 불과하였다. 한편, 총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 비율이 5% 미만인 고소득 가구의 초등학생 1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982,157원이고 중고생 자녀 1인 양육비는 1,482,111원이었다. 반면 총지출대비 식비지출 규모를 보았을 때, 총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 비율이 5%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1인 양육비는 669,201원, 중고생 1인 자녀양육비는 1,187,214원이었다.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지출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이 높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고소득 가계에서 중고생 자녀양육비로 상당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대신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즉,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비 지출이 많

아지고 전체 지출대비 비율이 높은 점은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계층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한 자녀 가계의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별 가계지출대비 월평균 자녀양육비 비율 (단위: 원, %)

소득 수준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율	1 자녀 가계								0~18세 1자녀 평균 양육비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		중고생		평균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고 소득 가계	5% 미만	261,469	7.7	758,493	19.6	982,157	24.0	1,482,111	32.2	871,060	21.8
	5.00~9.99%	210,470	7.1	335,941	10.9	890,710	24.4	1,218,156	30.7	663,819	19.4
	10.00~14.99%	169,525	5.9	201,413	7.0	655,789	19.6	746,487	21.7	443,304	14.2
	15.00~19.99%	-	-	-	-	-	-	662,050	20.6	662,050	20.6
	20.00% 이상	-	-	-	-	-	-	-	-	-	-
저 소득 가계	5% 미만	218,340	7.8	450,573	14.9	669,201	20.6	1,187,214	31.5	631,332	19.6
	5.00~9.99%	190,553	10.2	393,830	18.9	364,652	17.8	443,522	20.8	348,139	17.1
	10.00~14.99%	147,706	8.6	325,113	17.2	291,551	15.4	439,628	21.9	301,000	16.1
	15.00~19.99%	118,241	8.2	371,329	21.5	247,183	15.4	491,851	26.6	307,151	18.5
	20.00% 이상	83,935	6.2	119,757	20.2	237,694	15.9	247,827	26.2	272,053	17.8

주: 분석대상 사례수가 5미만인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2003년도 가계조사』 원자료(통계청) 재분석.

표 4. 한 자녀 가계의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별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지출 비율(2003년) (단위: 원, %)

소득 수준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율 (생활수준)	1자녀 가계								0~18세 1자녀 평균 양육비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		중고생		평균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고 소득 가계	5% 미만	261,469	5.3 (4,939,136)	758,493	12.1 (6,285,775)	982,157	15.7 (6,248,999)	1,482,111	23.4 (6,337,170)	871,060	15.2 (5,732,564)
	5.00~9.99%	210,470	5.3 (4,006,490)	335,941	7.5 (4,521,132)	890,710	16.3 (5,457,835)	1,218,156	24.2 (5,029,286)	663,819	14.6 (4,541,595)
	10.00~14.99%	169,525	3.9 (4,313,658)	201,413	5.3 (3,801,775)	655,789	16.1 (4,064,625)	746,487	18.7 (3,992,158)	443,304	11.1 (3,978,412)
	15.00~19.99%	-	-	-	-	-	-	662,050	17.3 (3,820,125)	662,050	13.5 (4,893,775)
	20.00% 이상	-	-	-	-	-	-	-	-	-	-

<표 4> 계속

소득 수준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율 (생활수준)	1자녀 가계								0~18세 1자녀 평균 양육비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		중고생		평균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저소득 가계	5% 미만	218,340	9.8 (2,232,941)	450,573	20.8 (2,168,639)	669,201	29.1 (2,302,326)	1,187,214	45.3 (2,623,133)	631,332	28.8 (2,193,362)
	5.00~9.99%	190,553	9.0 (2,125,548)	393,830	17.3 (2,271,835)	364,652	15.6 (2,332,368)	443,522	19.1 (2,325,701)	348,139	16.0 (2,178,604)
	10.00~14.99%	147,706	7.8 (1,946,170)	325,113	16.2 (2,001,566)	291,551	14.0 (2,088,922)	439,628	19.4 (2,264,144)	301,000	15.0 (2,003,511)
	15.00~19.99%	118,241	7.7 (1,528,279)	371,329	19.6 (1,893,389)	247,183	10.4 (2,367,591)	491,851	28.7 (1,713,551)	307,151	17.3 (1,775,811)
	20.00% 이상	83,935	6.8 (1,238,868)	119,757	9.7 (1,233,587)	237,694	16.1 (1,479,615)	247,827	17.7 (1,400,644)	272,053	20.7 (1,314,433)

주: 1) 괄호 안은 분석대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임.
 2) 분석대상 사례수가 5미만인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2003년도 가계조사』 원자료(통계청) 재분석

이어서 자녀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았다.¹⁰⁾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2자녀 가계의 경우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저소득 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라 363,053원(소득 대비 23.1%, 가계지출 대비 22.4%)에서 783,900원(소득 대비 33.7%, 가계지출 대비 23.3%)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고소득 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585,050원(소득 대비 15.6%, 가계지출 대비 24.5%)에서 1,348,458원(소득 대비 20.0%, 가계지출 대비 30.2%)까지 분포하였다. 3자녀 가계의 경우에도 최고 1,874,683만원(소득 대비 27.1%, 가계지출 대비 37.5%)까지 지출하고 있었지만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10) 자녀수에 따른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데 자녀연령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본 연구의 한계로 미리 밝혀두는 바임.

표 5. 자녀수별, 소득계층별 생활수준에 따른 월평균 자녀양육비와 총소득 및 가계 지출 중 구성비 (단위: 원, %)

소득 수준	총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율	1자녀 가계			2자녀 가계			3자녀 가계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소득대비 비율	양육비	지출대비 비율	소득대비 비율
고소득 가계	5% 미만	871,060	21.8	15.2	1,348,458	30.2	20.0 (6,733,361)	1,874,683	37.5	27.1 (6,918,518)
	5.00~9.99%	663,819	19.4	14.6	1,070,753	28.0	23.3 (4,589,853)	1,249,154	31.2	24.5 (5,103,432)
	10.00~14.99%	443,304	14.2	11.1	594,176	18.1	15.1 (3,943,322)	636,976	19.2	15.3 (4,170,241)
	15.00~19.99%	662,050	20.6	13.5	893,011	26.0	22.6 (3,956,587)	880,529	25.7	25.1 (3,515,266)
	20.00% 이상	-	-	-	585,050	24.5	15.6 (3,735,760)	-	-	-
저소득 가계	5% 미만	631,332	19.6	28.8	783,900	23.3	33.7 (2,323,834)	-	-	-
	5.00~9.99%	348,139	17.1	16.0	470,381	21.8	20.0 (2,352,026)	705,428	29.5	25.4 (2,782,242)
	10.00~14.99%	301,000	16.1	15.0	469,006	23.1	21.5 (2,177,203)	622,275	28.5	28.7 (2,167,364)
	15.00~19.99%	307,151	18.5	17.3	437,713	24.4	23.4 (1,869,417)	565,757	29.4	27.2 (2,077,852)
	20.00% 이상	272,053	17.8	20.7	363,053	22.4	23.1 (1,572,765)	434,680	25.7	25.6 (1,698,958)

자료: 『2003년도 가계조사』 원자료(통계청) 재분석

4. OECD 국가의 자녀양육비 부담 지원방안

OECD 회원국 정부의 상당수는 빈곤문제의 해결과 가정 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세제지원과 현금지원 정책은 개별 가정에서 지출되는 자녀양육비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구체적 정책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 중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이 전반적으로 낮고 자녀출산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 지중해 국가들은 세제지원과 현금지원이 보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여성 취업률이 높고 동거상태에서 자녀출산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서는 현금지원 정책이 주로 개인의 재정자립 지원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책대상이나 지원수준은 매우 다르다.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소득-자산조사에 근거하여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최근 OECD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의 하락에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현금지원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개별 가정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모든 출산 여성에게 800EU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태리에서도 2004년부터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1,000EU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독일에서는 2004년부터 무자녀 가족의 사회보장 부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양육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지원금의 규모가 실제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금지원에 대해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은 실제 자녀양육비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단일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제지원 정책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규모, 즉 자녀수의 차이에 따른 가구별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피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 가정은 조세제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취업여부라던가 자녀수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기혼가정과 동거가정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면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성으로 인하여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제지원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즉, 전술된 바와 같이 자녀수의 차이에 따르는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도 자녀가 있거나 또는 자녀수가 많은 경

우 특별 공제를 실시함으로써 대가족에 대한 공동과세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이 개인 단위로 지원·지급되면서 모든 OECD 국가에서 조세제도는 사실상 분리과세와 개별과세의 성격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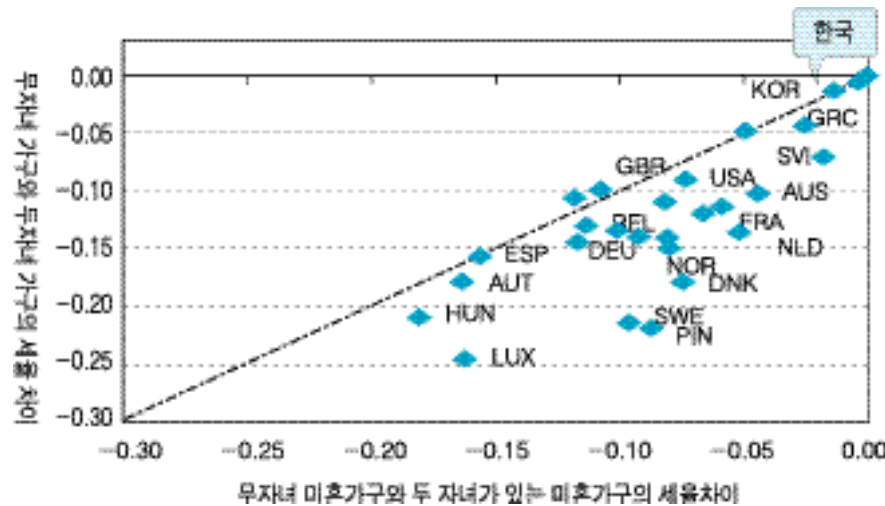
OECD 보고서에는 소득수준별 세제지원과 현금지원 방식의 효과를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와 자녀가 없는 맞벌이가구, 그리고 미혼자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현행 세율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하여 낮고,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이러한 가구유형별 세율의 차이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는데, 소득수준이 평균 생산직 임금(APW)의 100% 수준인 경우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 그 차이가 15% 이상이였다. 반면,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은 가구유형별 세제혜택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였다. 그리고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노르딕 국가와 미국은 조세제도를 통한 가구유형별 수평적 재분배효과가 중간 수준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는 미혼자와 비교하여 높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평균 생산직 임금(APW)의 100% 수준인 경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기혼가구와 미혼가구의 세율 차이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의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녀가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는 소득수준이 평균 생산직 임금(APW)의 100% 수준일 때,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과 한부모가구에 대한 세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각각 25%와 15% 포인트씩 낮지만, 평균 생산직 임금(APW)의 200% 수준에서는 세제혜택이 각각 15%와 10% 포인트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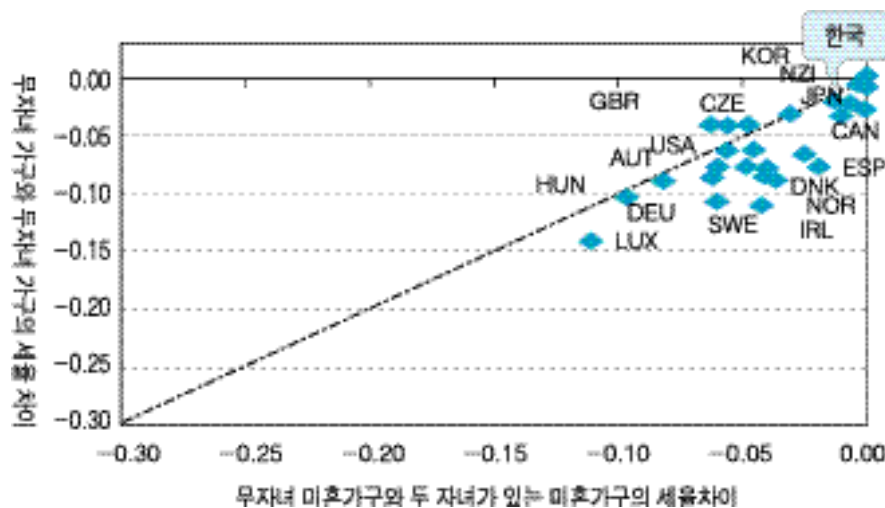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하락의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다른 OECD 회원국이 경험한 것과 달리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앞

그림 1. 평균 생산직 임금(APW) 100% 수준의 자녀양육 기혼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주: 평균 조세율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포함한 개념이며, 현금지원은 4~6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음. 그래프 상의 수직축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세율과 무자녀 기혼가구의 세율차이를 나타냄. 따라서 그 값이 클수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호적 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래프 상의 수평축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미혼가구와 자녀가 없는 미혼가구간의 세율차이를 나타냄(동 내용은 (그림 5)에 동일하게 적용됨).
 자료: Tax and Benefit models database, OECD(2004), d'Addio & d'Ecole, 2005, 재인용.

그림 2. 평균 생산직 임금(APW) 200% 수준의 자녀양육 기혼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자료: Tax and Benefit models database, OECD(2004), d'Addio & d'Ecole, 2005, 재인용.

서 진행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의 저출산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적 여건이 인구구조 및 규모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구변동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분담과 개별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유사한 형태로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도 인적공제와 교육비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소득대체를 역시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특히,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자녀양육에서도 드러나면서 양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계층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관련 비용 및 양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혼인경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혼인경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과 결혼의 관련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한편,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아동수당(또는 양육수당, 가족수당 등)제도와 같은 보편적 수당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소득계층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형평성 있는 발달기회를 갖도록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같은 간접비용의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녀출산을 연기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경력 축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정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직접비용 부분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